

5. 地方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372號 1991. 5. 23

지방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행방과 재산”을 “행방 또는 재산”으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제82조의2제1항제1호중 “포기 또는 인낙”을 “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으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제외한다)

제124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94조의8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제3호를 삭제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제194조의1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1.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 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

적 이내의 토지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로서 동법의 시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약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목 단서중 “녹지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년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

2의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94조의16중 “제194조의14제1항”을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59호·제2종제51호·제3

종제51호 및 제4종제58호중 “화약류”를 각각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로 하고, 동표의 제1종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제1종제38호의2·제2종제31호의2·제3종제33호의2·제4종제36호의2·제5종제28호의2 및 제6종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81. 증권업, 증권금융업, 증권대체결제업, 증개·명의개서대행업,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신용조사업, 상호신용금고업, 보험업 또는 단기금융업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종합토지세제등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중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국세의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영 제14조제1항제1호).
 -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의8제3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 다.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중기사업자의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 등은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정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 라. 은행업 및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영 별표).

〈법제처 제공〉